

●교육부고시 제2025-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1. 2025년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2025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6,650	8,290
초등학교	8,460	10,530
중 학 교	17,000	21,180
고등학교	22,470	27,990
교 직 원	57,320	57,320

2. 2025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의료수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별 학생 수, 손해율, 운영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급별(학생) 기준공제료 대비 20% 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